

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

2. 개정이유

-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통합 권고에 따라 유사 관련 조례를 통합·정비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1조 ~ 제4조)
- 나.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 ~ 제10조)
- 다.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 ~ 제14조)
- 라.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5조 ~ 제18조)
- 마.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9조 ~ 제31조)
- 바.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추진(안 제32조 ~ 제34조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- 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22일까지(20일간)
- 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- 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생년월일·연락처·의견
- 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청(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)
 -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, 파주시청 도시계획과(우 10932)
 - 전화 : 031)940-5371 / Fax 031)940-4709 / 이메일 bogi2001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견	비고